

제3200호
2025. 6. 13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
 편집인: 홍보담당관 유진영
 전화: 3396-4955
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고 시

선 람	기관위원장

구 보

◎ 고 시

제2025-53호 :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 2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53호

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고시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.)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(1982.08.1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06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76호(2024.08.01.)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(변경)된 남대문 도시정비행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6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사유

- 명동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특별가로구역 기존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
바닥 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적용 완화를 위해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자 함

Ⅱ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: 변경

-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시행지침(변경) : 붙임참조

Ⅲ. 열람장소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3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)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무원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[illegible]

<붙임>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

○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신설

기 정	- (없음)
신 설	7.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- 명동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특별가로구역 기존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바닥 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한계선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.